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

권 철*

【목 차】

I. 머리말	
II. 정교분리법과 종교단체 : 가톨릭교회의 세속화와 종교사단 문제	IV. 관련문제 : 조세·보조금 및 교육·사회활동
III. 종교단체 법제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	V. 맺음말에 갈음하여

【국 문 요 약】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종교단체를 둘러싼 정교(국가와 종교)관계 및 비영리단체 법제를 민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의 연혁, 세부내용 및 함의에 관한 것이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으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이다. 프랑스의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에는 대혁명 사상 그리고 제3공화제 시기 공화파의 반교회·반가톨릭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관해서는,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는 규정이 가지는 헌법적인 가치가 주로 주목을 받지만, 동법의 후반 부분은 수도회에 관한 세밀한 규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1905년에 제정된 정교분리법에서는 정교분리가 선언되어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사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종교단체 법제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론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의 철저한 반가톨릭교회 정책은 점차로 완화되어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호적인 종교단체 법제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이 종교단체의 (사단)법인화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구조가 10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I. 머리말

종교단체에 관한 법제는 각국의 역사, 정치,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반영하는바, 나라마다 법제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대륙법 국가에서는 대체로 헌법에서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규율을, 민법에서 비영리단체에 관한 규율을, 특별법에서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을, 조세법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문제를 규율한다. 본고에서는 민법학의 관점에서 프랑스의 종교단체를 둘러싼 정교(국가와 종교)관계 및 비영리단체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04년에 시행된 프랑스민법전은 이제까지 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혁명은 구체제하의 단체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르샤플리에법(Loi de Le Chapelier)'과 형법전에서는 단체와 결사를 철저히 금지하는 자세를 보였다. 민법전에서도 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따라서 프랑스민법전의 '인(人)'은 원칙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사람' 즉 '자연인(personnes physiques)'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personnes moral)'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체에 관한 입법사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프랑스의 민법전과 상법전에 "sociét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계약으로 구성한다는 점. 또 하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개별입법이 이루어진 점이다. 각각 1867년의 주식회사법¹⁾²⁾과 1901년의 비영리사단법³⁾이 대표적 법률이다.

우리 민법학계에 프랑스의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해서는 개설적으로 소개하는 논고가 존재한다.⁴⁾ 나아가 공법으로 시야를 넓히면, 정교분리에

1) Loi du 24 juillet 1867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2) 프랑스의 회사법에 관한 소개논문으로, 김성태, "프랑스 회사법상의 회사개념", 상사법연구 9집, 1991; 조르즈 리베르(정진세 번역), 프랑스회사법론, 삼지원, 1996; 원용수, "프랑스의 회사법 개정방향과 시사점", 상장협연구 54호, 2006 등.

3) 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 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본문 참조.

4) 남효순, "프랑스法에서의 법인의 역사 : 법인론 및 법인에 관한 관례와 입법의 발달사", 서울대 법학, 40권 2호, 1999; 여하운,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

관한 연구는 독일이나 미국에 관해서는 박사학위논문이 배출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⁵⁾ 프랑스에 관한 소개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다.⁶⁾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양질의 정보는 많지 않은데 1991년에 발간된 유익한 자료가 있다.⁷⁾ 한국의 각 종교를 대표하는 학자, 성직자와 시민이 참가한 공청회의 토론을 기록한 것인데, 권말 부록으로 각국의 종교단체법의 번역이 게재되어 있다.⁸⁾ 프랑스의 관련법률 중 1905년 정교분리법의 규정도 발췌 번역되어 있는데, 다만 아쉽게도 핵심적인 부분인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이 생략되어 있다.⁹⁾

본고는 프랑스의 종교단체에 관하여 공법적인 관점을 전제로 하면서 민사법제와의 상관성에 주목한다. 프랑스의 비영리단체 법제의 상당 부분이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고는 기존의 연구 부족을 메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한 토대를 확인하는 의미도 가진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법률이 1901년 7월 1일법(비영리사단 계약에 관한 1901년 7월 1일 법률¹⁰⁾=‘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12월 9일법(교회와 국가

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15권 4호, 2008;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 공익성이 인정된 사단 및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45권 1호, 2010, 77면; 박수곤, “프랑스법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규율”, 전북대 법학연구 39집, 2013, 39면

- 5) 황우여, 국가와 교회: 독일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2; 이영진,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에 관한 연구: 미연방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 각국 판례의 비교,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 6) 지규철, “프랑스헌법에서의 라이시테(laïcité) 원칙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10권 3호, 2009; 전훈,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고찰 : 프랑스 라이시테(laïcité)원칙에 관한 쾨세이데타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경북대) 41집, 2013;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 1905년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가천법학 11권 1호, 2018, 55면.
- 7)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종교단체의 법인체 등록, 민족문화사, 1991
- 8) 계제순으로 보면 일본, 태국, 중화민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서독,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케냐의 관련법률 조문을 발췌하여 게재하고 있다.
- 9) 이러한 규정의 생략에 어떠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프랑스의 관련법제의 구체적인 내용(법인화 및 상세한 규제)이 공청회 당시의 종교계(천주교와 개신교) 주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점은 본고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0) 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 publiée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JORF) du 2 juillet 1901.

의 분리에 관한 법률¹¹⁾='1905년 정교분리법')인만큼 프랑스의 제3공화정 시기의 법제개혁에 관한 법사학적 관점도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논의의 전제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기본법으로 라이시테(Laïcité)원칙을 선언하는 1905년 정교분리법 성립 전후의 상황을 개관하면서 '종교사단'(association cultuelle)¹²⁾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Ⅱ). 이어서 프랑스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기본법인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규정하는 기본유형인 비영리사단법인(association déclarée)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 같은 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수도회'(congrégation religieuse)에 관한 규율을 살펴본다. 아울러 1905년 정교분리법의 '종교사단'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Ⅲ). 관련문제로 조세·보조금 및 교육·사회활동에 관하여 언급하고(Ⅳ), 마지막으로 맺음말에 갈음하여 프랑스법에 관한 고찰이 우리법을 검토하는 데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생각해본다(Ⅴ).

Ⅱ. 정교분리법과 종교단체 : 가톨릭교회의 세속화와 종교사단 문제

1. 프랑스의 종교 상황 개관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종교인구에 관한 통계는 연도와 출처에 따라 숫자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가톨릭 신자가 80%에 이르렀고, 이른바 세속화와 다양화에 따라 독보적인 종교구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가톨릭이라고 인정하는 프랑스인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

11)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publiée au JORF du 11 décembre 1905.

12) 'association cultuelle'는 종교단체, 신도회, 문화결사 등 여러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번역어로 '종교사단'을 사용한다. 전훈, 앞의 논문(각주 6)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고찰"에서는 '종교단체'라고 번역하는데, 프랑스법상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이고 재단(fondation)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사단'이라는 것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한동훈, 앞의 논문(각주 6)에서는 '문화결사'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데, 이 번역어는 '(종교)에 배외'의 뜻을 가진 형용사 원문 'cultuelle'을 '문화외'에 해당하는 'culturelle'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다.¹³⁾ 대한민국 외무부가 2018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교 6%, 유대교 0.5%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¹⁴⁾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섹트(secte)’라고 통칭되는 소수 종교 집단의 움직임이 왕성해지고, 때때로 일탈 행동으로 보이는 활동이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¹⁵⁾¹⁶⁾ 또한 이슬람 세력이 점차 증가해 제2의 종교공동체로 부상하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의 이러한 상황은 약 320만 명 이슬람교도를 가진 이웃 독일과 유사해 보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이슬람교 국가인 구식민지 마그레브 지역(모로코·알제리·튀니지)에서 온 이민이 많다는 사정이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터키계 이민을 다수 받아들인 독일과는 다르다.

2. 프랑스의 정교관계사

근대 프랑스 정교관계사는 헌법사와 마찬가지로 파란만장하다. 정교관계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교회, 정권과 교권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념으로 일반적으로 ①국교제 ②공인종교제 ③분리제의 세 가지 이념형으로 구분되는데, 프랑스는 절대왕정 시대부터 혁명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를 경험해 왔다.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1905년 정교분리법 성립

13) 2013년 통계. "Le catholicisme en France", CSA, March 2013.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4-02-22.

14) 외교부, 프랑스 개황, 2018, 102면. 외무부 자료에는 개신교에 관한 통계는 없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비교적 소수로 루터파·칼뱅파의 개신교 2파가 2%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위키백과 "Protestantism in France" 항목). 대한민국 외무부 자료에는, 프랑스에서 1978년법이 종교·인종 등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인구조사 시 종교 관련 통계가 없어 정부의 공식 통계는 부재하다는 사정이 부기되어 있다.

15)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부터 2001년 정도 까지 섹트에 관한 문제가 크게 논의되었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최근에는 다소 진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섹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책이 진전되어 섹트 집단의 활동이 신중해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관련 원문 자료는 상당수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섹트에 대한 대책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1995년의 의회보고서(Commission d'enquête sur les sectes, *Les sectes en France*, Journaux officiels, 1996)와 함께,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크세쥬(Que sais-je?) 문고판으로 Nathalie Luca, *Les sectes*, PUF, 2016를 들어둔다.

16) 섹트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소개하는 우리말 논문으로 전훈, 앞의 논문(각주 6).

경위와 동법에서 규정하는 ‘종교사단’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구체제하의 ‘국교제’와 대혁명기의 변화

대혁명 이전의 구체제(ancien régime) 하에서는 1516년에 맺은 정교조약(Concordat)에 기초해 국교제가 채택되어 가톨릭교회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1598년 낭트칙령(Édit de Nantes) 이후에는 ‘관용’이 인정되어 개신교에도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지만, 1685년에 폐지된 이후 1789년 대혁명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국교제도가 존속되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¹⁷⁾은 종교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음으로써¹⁸⁾ 가톨릭 국교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시민종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루소의 영향을 받은 대혁명기의 사람들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까지 도모하는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대혁명기 특유의 혼란이 정교관계에 미치고 있었다.

(2) 1801년 정교조약(Concordat)¹⁹⁾ 체제의 성립: ‘공인종교제’

이 종교적 평화를 가져온 것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와 교황 비오(Pius) 7세 사이에 1801년에 맺은 17개조의 정교조약이었다. 이를 국내법화한 이듬해 정교조약 공포법에 따라 그 이후 약 1세기에 걸쳐 가톨릭 중심의 공인종교제가 채택되어 프랑스 정교관계의 법적 기초가 되었다.²⁰⁾ 1801년 정교조약 체제로 불리는 이 공인종교제는 프로테스탄트

17) Déclaration du 26 août 1789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8) 제10조 : 어느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그 의견표명이 비록 종교상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위협받지 않는다. Article 10 : Nul ne doit être inquiété pour ses opinions, même religieuses, pourvu que leur manifestation ne trouble pas l'ordre public établi par la loi.

19) 콩고르다(Concordat)는 '화친조약'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한 '화친조약'은 당사자가 빠진 일반용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교조약' 또는 '정교 화친조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한 가톨릭대사전에서 '정교조약'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정교조약'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20) 이는 정교조약 공포법(전 138개조)은 단순히 정교조약을 내용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톨릭에 관한 77개조에 이르는 부속조항과 동시에 프로테스탄트에 관한 44개조에 이르는 부속조 97개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과의 성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1831년에는 유대교에도 같은 대우를 인정하게 되었다. 다만 가톨릭을 프랑스 정부의 공인종교로 삼고 미사를 공역무(service public)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은 가톨릭 국교제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¹⁾

(3) '정교분리제'를 향한 움직임

가. 공화주의와 반가톨릭정책

공인종교제는 자유사상의 대두와 함께 19세기 중반부터 점차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가톨릭교회가 왕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프랑스 정치사에서, 반교권주의(l'Anticlericalisme)²²⁾를 표방하는 공화주의는 사실상의 국교제인 공인종교제를 강하게 적대시하였다. 이러한 공화주의자의 주장은 곧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제3공화제 발족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회 다수파, 내각, 대통령 등 정치기관이 모두 공화파로 채워지면서, 1879년 이후 프랑스 정치사는 공화주의 프로그램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란 ①가톨릭 세력의 거점인 수도회 폐지, ②카톨릭시즘이 침투한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혁, ③교회와 국가의 분리 등 세 가지였다. 이를 위한 정책은 20세기 초에 걸쳐 꾸준히 실시되었다. 특히 초등교육의 무상제·의무제·비종교성을 정하는 '쥘 페리법'(Lois Jules Ferry),²³⁾ 성직자를 초등교육에서 배제하는 '고블레법'(Loi Goblet)²⁴⁾ 등의 법률은 모두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²⁵⁾ 그리고 후술(III)하는 바와 같이, '1901년 7월 1

21) 그 취지는 가톨릭이 “국교”임을 명기한 1814년 헌장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실제로 공인된 종교 또는 장래에 공인되는 종교의 제사”에 대해 국교에서 봉급을 주도록 규정한 1830년 헌장 및 1848년 헌법 등에도 나타나 있다.

22) 교권주의(le Clericalisme)와 반교권주의(l'Anticlericalisme)의 투쟁으로 프랑스의 정치사를 소개하는 논문으로 지규철, 앞의 논문(각주 6).

23) Lois Jules Ferry는 통상 다음 두 법률을 지칭한다. La loi du 16 juin 1881 établissant la gratuité absolue de l'enseignement primaire dans les écoles publiques, publiée au JORF du 17 juin; La loi du 28 mars 1882 sur l'enseignement primaire obligatoire, publiée au JORF du 29 mars. 쥘 페리(Jules Ferry)는 발의자의 이름이다.

24) Loi du 30 octobre 1886 portant sur l'organisation de l'enseignement primaire. 1886년 10월 30일 법. 고블레(René Goblet)는 발의자의 이름이다.

25) 이러한 규정은, 후에 법전화되어 “공교육의 라이시테”라고 불리는 교육의 일반원리를 형상화하게 된다.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의 공교육에 관한 최근 소개논문으로, 김정인, “프랑스

일법' = '비영리사단법'(비영리사단 계약에 관한 1901년 7월 1일 법률)²⁶⁾은 일반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자유주의적인 법률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본고의 관점에서는 특히 수도회의 설립을 정부의 허가 하에 두는 등 엄격한 태도를 명확히 규율한 '반수도회법'이라고 부를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 로마 교황청과의 단절

공화주의 정권이 추진한 이러한 일련의 반교권주의·반가톨릭 정책은 1904년 7월 프랑스와 로마 교황청 사이의 외교관계를 사실상 단절되게 하였다. 이 사태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1905년 12월 9일에 제정된 '정교분리법'(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²⁷⁾이다. 정교분리법은 19세기 초 이래의 공인종교체제의 기초가 되었던 모든 규정, 즉 1801년의 정교조약, 가톨릭 및 개신교에 관한 부속조항, 그리고 유대교에 관한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다(동법 제44조). 이는 원칙적으로 외교교섭에 의해서만 폐기될 수 있는 국제조약(정교조약)을 프랑스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의미한다. 정교분리법은 프랑스의 정교 관계를 가톨릭 중심의 공인종교체제에서 정교분리체로 크게 변화시킨 획기적인 법률이다.

3. 1905년 정교분리법과 라이시테(Laïcité) 원칙

(1) 1905년 정교분리법: 개요 및 '종교사단'에 관한 논쟁

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총 6장 44개조로 된 1905년 정교분리법은 총칙 규정에서 ① 양심의 자유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함²⁸⁾과 동시에 ② 모든 종교에 대한

스 제3공화정 초기 공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체계의 완성", 서양사론 132호, 2017, 141면 이하. 김세희, "라이시테'를 통해서 본 19세기 프랑스의 교육: 근대화와 도덕·시민교육", 한국교육사학 42권 2호, 2020, 1면 이하를 참조.

26) 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 publiée au JORF du 2 juillet 1901.

27)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publiée au JORF du 11 décembre 1905

28) 제1조. 공화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공화국은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하여 이하에서 정하는 제한 아래에서만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한다. La République assure la liberté de conscience. Elle garantit le libre exercice des cultes sous les seules restrictions

국가의 공인, 급여의 지급 및 보조금의 교부를 금지하고 종교 예산도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⁹⁾ 여기에는 주목할 만한 예외도 인정되고 있지만,³⁰⁾ 그러한 규정에 의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 ‘라이시테(Laïcité)’ 원칙 - 이 명기됨과 동시에 국교제는 물론 공인종교제도 원칙적으로 배제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교분리법은, 전통적인 대성당(cathédrales), 교회(églises) 등 예배용 시설이나 신학교(les facultés)를 포함한 종교적인 건조물(Des édifices des cultes)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다.³¹⁾ 그리고 그 무상사용권을 새롭게 결성되는 ‘종교사단’(association culturelle)³²⁾에 부여한다는 구조를 채용하였다.³³⁾ 다른 종파와 마찬가지로 가톨릭교회도 주교협의회의 임의개최나 교회당 건립 등 여러 종교적 자유를 인정받았고 정부의 주교 임명권도 폐지되었지만, 반면 성직자들은 모두 공적 지위를 잃고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종교목적의 행진 등 외부적인 종교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적인 규제 권한에 따르게

édictées ci-après dans l'intérêt de l'ordre public.

29) 제2조 1항. 공화국은 어떠한 종교도 공인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조금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률이 공포된 후 1월 1일부터 종교활동에 관한 지출은 모두 국가, 도 및 시읍면의 예산에서 삭제된다. La République ne reconnaît, ne salarie ni ne subventionne aucun culte. En conséquence, à partir du 1er janvier qui suivra la promulgation de la présente loi, seront supprimées des budgets de l'Etat, des départements et des communes, toutes dépenses relatives à l'exercice des cultes.

30) 후술 (3) 참조

31) 제12조. 1905년의 원조문은 1998년에 약간의 개정을 거쳐 이하와 같다. 1항. Les édifices qui ont été mis à la disposition de la nation et qui, en vertu de la loi du 18 germinal an X, servent à l'exercice public des cultes ou au logement de leurs ministres (cathédrales, églises, chapelles, temples, synagogues, archevêchés, évêchés, presbytères, séminaires), ainsi que leurs dépendances immobilières et les objets mobiliers qui les garnissaient au moment où lesdits édifices ont été remis aux cultes, sont et demeurent propriétés de l'Etat, des départements, des communes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ayant pris la compétence en matière d'édifices des cultes. 2항. Pour ces édifices, comme pour ceux postérieurs à la loi du 18 germinal an X, dont l'Etat, les départements et les communes seraient propriétaires, y compris les facultés de théologie protestante, il sera procéd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suivants.

32) 번역어의 선택에 관해서는 각주 12) 참조. 종교사단(association culturelle)에 관한 단체·법인법적 고찰은 후술 III.2.(3) 참조.

33) 동법 제13조, 제19조.

되었는데, 특히 예배를 위한 집회는 공개된 것일 것, 1881년 제정된 집회법 소정의 요건에 따를 것 이외에는 신고제가 되었다.³⁴⁾

이렇게 교회와 국가는 제도상 분리되고 모든 종교단체는 다른 사법상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취급받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 종교 활동의 경제적, 물질적 기반이 되었던 종교적인 공공시설 법인은 폐지되고 그 재산은 정교분리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결성되어야 할 ‘종교사단’으로 이관되도록 규정되었다.³⁵⁾ 실제로 개신교와 유대교의 경우에는 그러한 종교사단이 소정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성되어 교회재산을 인수하게 되었다.

나. 정교분리법 시행 상의 여러 문제 : 종교사단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반발 등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정책에 크게 반발하였다. 즉 정교분리법이 정하는 종교사단은 단체의 지도자에게 사제를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기본적 조직원리인 성직위계제(hiérarchie ecclésiastique)와의 관계에서 문제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06년 8월 로마교황도 종교사단의 설립을 정식으로 금지하였다.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반발은, 프랑스 국

34) 정교분리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35) 정교분리법 제4조. 이 법률의 공포로부터 1년 이내에, 교구재산관리위원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장로회, 추기경회의 및 그 밖의 종교공공시설법인의 동산 및 부동산은, 그 재산에 부과된 모든 부담과 의무, 그 재산의 특별 충당과 함께, 당해 시설법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비영리사단에 이전된다. 이 비영리사단은 상기 시설법인의 종래 교구에서의 종교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단이 활동을 하게 되는 종교의 일반조직상 규칙에 따라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성된 것이어야 한다. Dans le délai d'un an, à partir de la promulgation de la présente loi, les biens mobiliers et immobiliers des menses, fabriques, conseils presbytéraux, consistoires et autres établissements publics du culte seront, avec toutes les charges et obligations qui les grèvent et avec leur affectation spéciale, transférés par les représentants légaux de ces établissements aux associations qui, en se conformant aux règles d'organisation générale du culte dont elles se proposent d'assurer l'exercice, se seront légalement formées, suivant les prescriptions de l'article 19, pour l'exercice de ce culte dans les anciennes circonscriptions desdits établissements. 동법 제18조. 종교의 비용, 유지 및 공적종교활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비영리사단은 1901년 7월 1일 법률 제1장 제5조 이하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단은 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Les associations formées pour subvenir aux frais, à l'entretien et à l'exercice public d'un culte devront être constituées conformément aux articles 5 et suivants du titre 1er de la loi du 1er juillet 1901. Elles seront, en outre, soumises aux prescriptions de la présente loi.

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톨릭의 활동기반이 되어야 할 종교사단의 결성을 무산시키고, 전국 각지의 대성당, 교회, 예배당 등이 모두 폐쇄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교분리법의 실효성이 문제제기되고 국민생활에 대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취해졌다.³⁶⁾ 즉 1907년 1월 2일에 제정된 ‘공공 예배 활동에 관한 법률’³⁷⁾은 ① 예배 활동에 대해 정교분리법 소정의 종교사단 뿐만 아니라 1901년 비영리사단법 소정의 사단법인이나 정교분리법 제25조 소정의 집회에 의해서도 확보할 수 있을 것(동법 제4조), 그리고 ② 종교활동용 건물은 종교사단이 없는 경우 종래와 같이 신자, 사제의 사용에 맡기며, 1901년 비영리사단법 소정의 사단법인 및 정교분리법 소정의 집회의 주재자(사제)에게도 무상사용권을 인정할 것(동법 제5조)을 정하였다. 이 법률은 정교분리법이 도입한 핵심적인 규율인 ‘종교사단’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에서 ‘종교사단’ 설립을 거부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으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정부와 로마 교황청과 화해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³⁸⁾ 또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정교분리법 제25조는 예배를 위한 집회를 신고제로 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성직자들의 반대와 신자들의 저항으로 규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는 1907년 3월 “공공집회는 그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다.”³⁹⁾고 개정되어 완전한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다. 공금지출 금지원칙에 대한 예외

정교분리법 제2조는 공금지출의 금지를 정하고 있지만,⁴⁰⁾ 동조 2항은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시설사제(aumônerie)의 업무에 관련되고, 또한

36) 이러한 상황의 전망에 관해서는 Léon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2e édition, Tome 5, 1925, pp.558-561. 원서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 홈페이지(<https://www.bnf.fr/fr>)에서 스캔본 열람 가능.

37) Loi du 2 janvier 1907 concernant l'exercice public des cultes, publiée au Journal officiel le 3 janvier 1907

38)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 (2) 가. 참조

39) 1907년 3월 28일 법률(Loi du 28 mars 1907 relative aux réunions publiques) 제1조.

40) 제2조 1항. 각주29) 참조.

고등학교(lycées), 중학교(collèges), 초등학교(écoles), 구원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교도소 등의 공공시설 법인(établissements publics)에서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지출”은 공적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⁴¹⁾ 정교분리의 원리와 종교적 자유를 양립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교분리법 제2조의 문언상 명백한 예외 외에 종교적 행위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공공재산인 성당·교회건물 등의 보수·유지를 위해 공금을 지출하는 것이 문제된 것이다. 이 문제는 정교분리법 제13조 마지막 항⁴²⁾에서 이를 인정하는 추가적 개정을 하는 형태로 1908년에 해결되었다.

(2) 정교분리 원칙의 변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가. 우호적 분리로의 변화

제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의 정교분리법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변화에 대해서 저명한 역사가(Adrien Dansette)는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는 우호적인 분리로 변화되고 있다”고 서술한다.⁴³⁾ 이러한 진단에는 몇 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로 자유주의적 판례,⁴⁴⁾ 둘째로 보조금 문제,⁴⁵⁾ 셋째로 가톨릭 ‘교구사단’ 결성 문

41) 제2조 2항. 다만 시설사제(aumônerie)의 업무에 관련되고, 또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구원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교도소 등의 공공시설 법인에서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지출은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Pourront toutefois être inscrites auxdits budgets les dépenses relatives à des services d'aumônerie et destinées à assurer le libre exercice des cultes dans les établissements publics tels que lycées, collèges, écoles, hospices, asiles et prisons.

42) 국가, 도, 시읍면 및 시읍면협동공공시설법인은 이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예배용건물의 유지 및 보존에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L'Etat, les départements, les communes et l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pourront engager les dépenses nécessaires pour l'entretien et la conservation des édifices du culte dont la propriété leur est reconnue par la présente loi.

43) Adrien Dansette, *Histoire religieuse de la France contemporaine: L'Eglise catholique dans la mêlée politique et sociale*, Edition revue et corrigée, 1965, p.325

44) 1905년 정교분리법 시행 직후부터 발생한 수많은 가톨릭 관계의 종교분쟁에서 법원이 자유주의적 판례를 확립한 것은 우호적 분리로 전환점이 되었다. 행정법원과 사법재판소는 모두 이른바 교회자율권(교회가 스스로 설정한 내부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할 권리)을 존중하는 판례를 잇따라 내놓았다.

제 등이다. 특히 위((1)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교분리법이 직면한 큰 난관은 가톨릭에 관한 동법 소정의 ‘종교사단’ 설립 문제였는데, 여기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후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우선 1871년 이래 독일령으로 되어 있던 알자스·로렌 지방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제국이 패배하여 다시 프랑스령이 되었는데(1919년), 그곳에서는 정교분리법 제정 전의 공인종교체제가 존속하고 있었던 관계로 프랑스 정부는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로마 교황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였다(1921년 5월). 이렇게 프랑스 정부는 교황청과의 화해를 지향하며 현안 사항의 해결에 임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 등 프랑스 국내법에도 성직위계제(hiérarchie ecclésiastique)를 기본으로 하는 가톨릭교회법에 합치하는 종교사단 구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것이, 주교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교구에 하나의 단체만 결성하는 ‘교구사단(association diocésaine)’ 설립이라는 방안이었다.⁴⁶⁾ 로마교황도 프랑스 국내 주교에 대해 교구사단 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1924년 6월) 정교분리법 시행 후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되었다.⁴⁷⁾

나. 알자스·로렌의 특례 제도

가톨릭 ‘종교사단’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된 알자스·로렌(저지 라인, 고지

45)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병사를 시영묘지에 매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가 주최하는 종교 의식의 비용을 시 예산에 계상하는 취지를 의회가 의결했지만 도지사가 이것을 위법이라고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État)은 공금 지출 금지원칙은 영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목적으로 경비를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여 도지사의 결정을 취소하였다(1922년). 이후 판례·학설상 ① 구호원·자선사업단체 등이 행하는 종교색을 수반하나 공익성을 갖는 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② 전사한 병사의 시영묘지 매장 시의 의식 등 공적으로 요청된 역무에 사제가 협력하는 경우 이에 상응한 보수를 공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③ 공공재산인 사제관 등을 사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또는 교회관리수당을 공금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큰 틀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대적 정교분리는 제도 수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46) 단체·법인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해결방안은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국내법과 정합적이면서도 가톨릭교회법에도 합치하는 법인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7) 이 논점에 관한 통찰력 있는 서술은 Léon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2e édition, Tome 5, 1925, p.549 et s. 참조.

라인 및 모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령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령으로 복귀한 시점에 공인종교 체제가 존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도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으로 대표되는 반교권주의 입법이나 라이시테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로마교황이 공인한 ‘교구사단’ 결성과 같은 시기에 제정된 것이 1924년 6월의 프랑스 민사법 시행법이다.⁴⁸⁾ 이는 문자 그대로 프랑스민법전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동시에 ① 1901년 비영리사단법으로 대표되는 비영리 사단에 관한 입법은 시행하지 않을 것, ② 당시 현행법인 독일민법 중에 법인 관계 규정⁴⁹⁾은 계속 적용할 것, ③ 종교·수도회에 관한 지방입법도 계속 적용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⁵⁰⁾ 이렇게 하여 알자스·로렌 지방에서는 프랑스령이면서도 정교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분리원칙과 다른 공인종교체제가 적용되고 비영리사단 법제에 대해서는 독일법이 각각 특례제도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3) 정교분리 원칙의 현재

가. 헌법화된 라이시테(Laïcité)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당초의 적대적 관계에서 점차 완화되어 온바, 종교활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교회에 대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요청이 반영된 것이 프랑스의 정교분리 = 라이시테(Laïcité)의 모습이다. 정교분리법은 제3공화제 시기인 1905년 12월에 제정된 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총칙적 규정을 비롯한 기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의 헌법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제4공화제(1946-58년), 그리고 종래의 의회주도형 정치체도를 근본적으로 고친 현행 제5공화제(1958년-현재)로 이행되어 왔다. 여기서 비로소 정교분리법이라는 법률상의 원칙에 머물러 있던 라이시테의 원리가 헌법상에 위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1946년에 제정된 제4공화

48) Loi du 1er juin 1924 mettant en vigueur la législation civile française dans les départements du Bas-Rhin, du Haut-Rhin et de la Moselle.

49) 독일민법 제21조-제79조.

50) 프랑스법 시행법에 관해서는 Jean Morange, *La liberté d'association en droit public français*, 1977, p. 103 et s. 참조.

제 헌법은 프랑스가 ‘불가분하며 비종교적(laïque)이고, 민주적이며 사회적인 공화국이다’⁵¹⁾라는 것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헌법 전문에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5공화국 헌법 제1조⁵²⁾도 같은 정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 최근 상황과 과제

1905년 정교분리법 및 1901년 비영리사단법의 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날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의 비종교화 문제나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나타난 과제 등 다양한데, 본고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관계로 매우 간략하게 언급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이슬람교의 종교스카프 착용문제⁵³⁾가 큰 논란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종교시설(성당, 교회 등)을 갖추지 못한 신도시 주민의 비용부담 문제가 있다. 1905년 정교분리법 개정과 라이시테 원칙의 실효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법 제정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당시 내무장관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마슈론(Jean-Pierre Machelon)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 관련 문제의 검토를 지시한바, 그 보고서가 2006년에 공간되었다.⁵⁴⁾⁵⁵⁾

51) 제4공화국 헌법(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27-10-1946)) 제1조 :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52) 제5공화국 헌법(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제1조 :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53) 관련 문제에 관한 소개로 지규철, “프랑스공교육에서의 비종교성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이슬람스카프논쟁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4호, 2009

54) 동 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인터넷 상에서 열람 가능하다. Jean-Pierre Machelon, *Les relations des cultes avec les pouvoirs public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6. 종교사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 새로운 예배용 시설의 건설을 용이하게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상당한 종교 인구를 차지하게 된 이슬람교 등을 포함해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려는 점에 있다고 한다.

55) 본고 최종교정 마감 직전에 1905년 정교분리법 제19조 이하의 규정을 개정하는 최신 법률이 통과된 것을 인지하였다. 2021년 8월 24일 법률(LOI n° 2021-1109 du 24 août 2021

Ⅲ. 종교단체 법제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

1. 총설

(1)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1905년 정교분리법 이전의 공인종교 체제(콩코르다 체제) 하에서는 특정 종교(가톨릭, 개신교 2파, 유대교)에 공적 지위가 부여되었으며, 이들 종교의 의식과 제사는 국가의 공역무(service public)였다. 따라서 공인종교단체에는 그 운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며, 또한 사제 및 종교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1905년 정교분리법은 “공화국은 어떤 종교도 공인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⁵⁶⁾고 규정하여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공인종교제의 부인과 종교에 대한 공적 보조금 금지는 ‘라이시테(Laïcité)’ 원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모든 종교는 국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비영리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법률관계도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제도의 틀 안에서 파악하게 된다.

(2) 종교단체 법제의 열개

프랑스에서는 현재 7개의 종교제도가 존재하는데,⁵⁷⁾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프랑스 본토의 일반제도(가., 나.)와 알자스·모젤 지방의 특례제도(다.)이다.

가. 1901년 비영리사단법: 비영리사단과 수도회

프랑스 종교단체 법제의 기초는 일반적인 비영리 사단을 대상으로 하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비영리 사단 계약에 관한 법률’)과 1905년 정

confortant le respect des principes de la République)에 따른 것인데, 이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고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부기해 둔다.

56) 제2조 1항 1문. 원문 및 번역은 각주29).

57) 이 중 5개는 해외 영토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교분리법(‘교회와 국가와의 분리에 관한 법률’)의 두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양자의 관계는 비영리사단법이 정교분리법에서 준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⁵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은 근대 프랑스에서 최초로 일반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법이다. 동법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가진 단체가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⁵⁹⁾ 행정청에 소정의 신고하면 일정한 법률상의 능력(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⁶⁰⁾ 따라서 사회활동, 문화활동, 교육활동 등과 함께,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도 이 법률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결성하고 법인이 될 수 있다.⁶¹⁾ 한편, 비영리사단법은 가톨릭 수도회에 대해서는 그 결성을 허가제로 하고,⁶²⁾ 또한 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인정하는 등 특별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⁶³⁾ 이는 동법이 제정 당시의 반교권

58) 1905년 정교분리법 제18조: 종교의 비용, 유지 및 공적인 종교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성된 비영리사단은 1901년 7월 1일 법률 제1장 제5조 이하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단은 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Les associations formées pour subvenir aux frais, à l'entretien et à l'exercice public d'un culte devront être constituées conformément aux articles 5 et suivants du titre 1er de la loi du 1er juillet 1901. Elles seront, en outre, soumises aux prescriptions de la présente loi.

59)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2조 : 비영리사단은 사전적인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로이 결성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사단은 제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다. Les associations de personnes pourront se former librement sans autorisation ni déclaration préalable, mais elles ne jouiront de la capacité juridique que si elles se sont conformées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5.

60)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5조, 제6조.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박수곤 앞의 논문(각주4)의 논문84면을 참조.

61) 후술 2.(1) 참조.

62)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13조 1항 1문 : 모든 수도회는 국사원의 구속력 있는 의견에 기한 테크레에 의하여 법률상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Toute congrégation religieuse peut obtenir la reconnaissance légale par décret rendu sur avis conforme du Conseil d'Etat.

63)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15조 1항: 모든 수도회는 수입과 지출의 명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도회는 매년 전년도 결산보고서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Toute congrégation religieuse tient un état de ses recettes et dépenses ; elle dresse chaque année le compte financier de l'année écoulée et l'état inventorié de ses biens meubles et immeubles. 제2항: 수도회는 구성원의 성명, 수도회 내부에서의 호칭, 국적, 연령, 출생지 및 가입일을 기재한 완전한 구성원 명부를 본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La liste complète de ses membres, mentionnant leur nom de famille, ainsi que le nom sous lequel ils sont désignés dans la congrégation, leur nationalité, âge et lieu de naissance, la date de leur entrée, doit

주의 혹은 반카톨릭 사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논자에 따르면 동법은 ‘반수도회법’ 또는 ‘수도회규제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⁶⁴⁾

나. 1905년 정교분리법: 종교사단(교구사단)

1905년 정교분리법은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비영리사단을 전제로 하여 특히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사단(association cultuelle)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즉 1905년 정교분리법은 종교사단의 설립 및 법인격 취득에 대하여 1901년 비영리사단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데,⁶⁵⁾ 그 목적이나 법률상의 능력에 대해서는 일반 비영리사단과는 다르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⁶⁾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가톨릭교회에 관해서는 성직위계제를 배려한 형태인 교구사단(association diocésaine)이 설립되는데⁶⁷⁾ 이는 기본적으로 종교사단과 같다.

다. 알자스·로렌의 특례제도

이상은 프랑스의 종교단체에 관한 일반제도인데, 알자스·로렌 지방에는 특례제도가 통용되고 있다. 이 지방에서는 역사적 사정으로 인해 현재도 가톨릭, 개신교 2개 파, 유대교에 관한 공인종교 체제가 존속하고 있다.

se trouver au siège de la congrégation. 제3항: 수도회는 지사의 요구에 따라 지사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회계명세서, 재산목록 및 명부를 그 자리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Celle-ci est tenue de représenter sans déplacement, sur toute réquisition du préfet à lui même ou à son délégué, les comptes, états et listes ci-dessus indiqués. 제4항: 본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사의 요구에 대하여 허위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요구에 따르는 것을 거부한 수도회의 대표자 또는 지도자는 제8조 2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Seront punis des peines portées au paragraphe 2 de l'article 8 les représentants ou directeurs d'une congrégation qui auront fait des communications mensongères ou refusé d'obtempérer aux réquisitions du préfet dans les ca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64) 후술 2.(2) 참조

65) 1905년 정교분리법 제18조: 종교의 경비, 유지 및 공적 종교활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결성된 비영리사단은 1901년 7월 1일법 제1장 제5조 이하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단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Les associations formées pour subvenir aux frais, à l'entretien et à l'exercice public d'un culte devront être constituées conformément aux articles 5 et suivants du titre Ier de la loi du 1er juillet 1901. Elles seront, en outre, soumises aux prescriptions de la présente loi.

66) 후술 2.(3) 참조

67) 전술 II.3.(2) 가. 참조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⁶⁸⁾ 이 지방에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 및 1905년 정교분리법은 적용되지 않고, 독일민법을 기본으로 하는 특례제도가 적용된다.⁶⁹⁾ 이와 같이 현재 프랑스의 종교단체 제도는 일반제도와 특례제도가 존재하는데, 이하에서는 일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종교단체에 관한 법제

일반제도에 따르면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의거한 일반 비영리사단(1)과 수도회(2) 및 1905년 정교분리법에 의거한 종교사단(3)의 세 유형이 있다. 관련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영리사단법인(association déclarée)

가. 총설

일반 비영리사단에 대해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1장(제1조-제9조)과 비영리사단법 시행령 제1장 제1절(제1조-제7조)이 규율한다. 일반 비영리사단은 수도회나 종교사단에 비해 설립이 용이하고 운영상의 규제나 국가의 감독도 느슨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소수종교(섹트=secte) 단체⁷⁰⁾의 상당수는 이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교 단체는 후술하는 종교사단의 설립요건(특히 목적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비영리사단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나. 설립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따르면 “이익을 분배하는 것 이외의 목적”의 단체, 즉 비영리 목적의 단체는 2인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⁷¹⁾⁷²⁾ 이는 ‘결사의 자유’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고

68) 전술 II.3.(2) 나.

69) 독일민법 이외에 구 독일결사법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법 개정예에 의해 구 독일결사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문화지원, 비영리 사단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 이 지방의 비영리사단 법제는 지방민법전으로 일원화되었다. 이 때 1901년 비영리사단법의 규정이 일부 도입되었지만 특례제도의 기본적인 부분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았다.

70) 섹트(secte)에 대해서는 전술 II.1. 참조.

71)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1조 : 비영리사단은, 두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사람이 이익을 분배

있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따르면 설립자는 단체본부가 있는 도의 도청(préfecture du département)에 설립신고를 하여(déclarée) 공시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⁷³⁾ 또한 파리에 본부를 둔 단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신고를 한다.⁷⁴⁾ 신고에는 ①단체의 명칭과 목적, ②단체의 소재지, ③관리를 책임지는 자의 성명, 직업, 주소 및 국적을 기재하고 이에 규약 1부를 첨부해야 한다.⁷⁵⁾ 신고 수령증은 5일 이내에 교부되어야 하나 이때 행정청은 형식 미비를 이유로 하는 것 이외에 이 수령증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⁷⁶⁾ 수령증의 내용은 신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등재됨으로써 공시된다.⁷⁷⁾ 물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법인격이 없는 사실상의 단체로 취급된다.⁷⁸⁾ 또한 개개의 비영리사단을 포괄하는 연합체를 설립할 수도 있다.⁷⁹⁾

다. 법률상의 능력

위와 같이 설립신고한 비영리사단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능력을 취득한다.⁸⁰⁾ 즉 ①소송 당사자능력,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급, ③회비 징수권, ④단체 운영을 위한 시설 및 목적 수행을 위

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영속적으로 지식 또는 활동을 공유하려고 하는 합의이다. 비영리사단은, 그 효력에 대하여, 계약 및 채권채무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L'association est la convention par laquelle deux ou plusieurs personnes mettent en commun, d'une façon permanente, leurs connaissances ou leur activité dans un but autre que de partager des bénéfices. Elle est régie, quant à sa validité, par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applicables aux contrats et obligations. - 제2조 : 비영리사단은 사전적인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로이 결성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사단은 제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다. Les associations de personnes pourront se former librement sans autorisation ni déclaration préalable, mais elles ne jouiront de la capacité juridique que si elles se sont conformées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5.

72) 1901년 비영리사단법 상의 일반 비영리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박수곤 앞의 논문(각주4)의 논문 77면 이하.

73)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5조

74) 1901년 비영리사단법 시행령 제4조

75)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5조 2항

76) 국사원 1930년 10월 24일 판결

77)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5조 4항, 시행령 제1조 2항

78) 프랑스법상의 비법인단체에 관한 소개 논문으로, 박수곤, “프랑스법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규율”, 전북대 법학연구 39집, 2013, 39면

79) 1901년 비영리사단법 시행령 제7조

80)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6조

해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유상 취득, ⑤현실증여 수령, ⑥ “순전히 구제, 자선, 과학·의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상양여(생전증여 또는 유증) 수령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⑤ 및 ⑥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증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고 사단법인에 대해 인정되는 이 한정된 법률상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작은 법인격’(petite capacité juridique)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취득하려면 행정허가를 받아 공익인정사단이 되어야 한다(이른바 ‘큰 법인격’(grande capacité juridique)). 구체적인 수증절차에 대해서는 종교사단에서 후술한다. 덧붙여,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비영리사단법인이라도 공적 기부금을 수령할 수 없다.⁸¹⁾

라. 운영

1901년 비영리사단은 관리에 관한 변경 및 규약 개정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⁸²⁾ 또한 이들의 변경·개정은 비영리사단법인의 본부에 보관하는 기록부에 기입해야 한다.⁸³⁾ 그리고 누구든지 신고가 이루어진 행정청에서 규약 및 신고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며,⁸⁴⁾ 또한 상기의 변경은 신고한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⁸⁵⁾ 한편, 재정 측면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수익활동을 하는 단체 및 일정액 이상의 공적 지원을 받는 단체는 매년 회계장부의 비치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마. 해산

비영리사단의 해산에는 자율적 해산과 강제적 해산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자주적 해산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 해산과 총회 결의에 따른 임의해산의 두 가지가 있다.⁸⁶⁾ 이런 해산에는 법률상 신고가 요구되지 않지만 단체는 자주적으로 도청(préfecture)에 신고를 하고 관보에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강제적 해산은 다시 사법해산과 행정해산의 두 가지로 나뉜다. 사법해산은 비영리사단이 위법한 목적, 법률 및 공서양속에 반하

81) 국사원 1992년 10월 9일 판결

82)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6조 5항

83)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6조 7항, 시행령 제6조

84) 1901년 비영리사단법 시행령 제2조

85)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6조.

86)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9조.

는 목적, 국토보전 및 공화정체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⁸⁷⁾ 및 규약변경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⁸⁸⁾에 관계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근거하여 지방법원(tribunal judiciaire)⁸⁹⁾가 선고하는 것이다.⁹⁰⁾ 사법해산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를 유지 또는 재결성하는 것과 해산한 단체의 구성원의 집회에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⁹¹⁾ 한편, 행정해산은 비영리사단법이 아닌 특별법인 전투단체 등 금지법⁹²⁾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진다.⁹³⁾ 행정해산 이외의 해산의 경우 비영리사단의 재산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귀속하며 규약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귀속하도록 한다.⁹⁴⁾ 이 때 출자의 반환을 제외하고는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⁹⁵⁾

(2) 수도회(congrégation religieuse)

가. 총설

수도회에 대해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3장(제13조-제18조)과 동법 시행령 제2장(제16조-제26조)이 규율한다. 1905년 정교분리법에서도 수도회는 비영리사단법의 규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⁶⁾ 이와 같이 수도회는 기본적으로 일반 비영리사단을 규율하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

87)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3조.

88)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5조.

89) 2019년에 이루어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원래 사용되었던 ‘대심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이라는 명칭이 ‘tribunal judiciaire’로 변경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Conformément à l'article 36 de l'ordonnance n° 2019-964 du 18 septembre 2019, ces dispositions entrent en vigueur au 1er janvier 2020.

90)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7조.

91)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8조 2항, 3항.

92) 전투단체 및 민병에 관한 1936년 1월 10일법. Loi du 10 janvier 1936 sur les groupes de combat et milices privées.

93) 구체적인 해산 사유로는 도로에서 무장 시위 행위를 일으키는 것(제1조 1항 1호), 국토보전·공화정체에 공격을 가하는 것(3호),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6호), 테러를 일으키는 것(7호) 등이 열거되고 있다. 또한, 해산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가 제기된 때, 국사원은 긴급하게 재정하여야 한다(동조 2항).

94)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9조

95) 1901년 비영리사단법 시행령 제15조

96) 1905년 정교분리법 제38조

에 규정되어 있으나 양자의 취급은 크게 다르다. 수도회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 및 1905년 정교분리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와 학설에 따라 ①구성원이 수도서원(vota religiosa)에 복종하고, ②공동생활을 영위하며, ③교회가 인가한 규칙에 복종이 인정되는 단체로 되어 있다.⁹⁷⁾ 수도회는 2005년 기준 620여개 단체가 존재하며, 1988년 이후에는 가톨릭 수도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수도회도 승인되었다.⁹⁸⁾

나. 설립

수도회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사원의 회의를 거친 데크레에 근거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⁹⁹⁾ 신청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되며 신청서에는 모든 설립자가 서명하여야 한다.¹⁰⁰⁾ 그리고 신청서에는 ①규약 2부, ②수도회의 설립·유지를 위한 자금에 대한 명세서, ③수도회에 속하는 자의 성명, 연령, 출생지, 국적을 기재한 명부,¹⁰¹⁾ ④교구의 주교가 해당 수도회 및 수도회 구성원을 자신의 재치권(관할, jurisdiction) 아래 둘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¹⁰²⁾ 내무부 장관은 수도회 본부가 있는 지자체의 의견 및 지사의 보고서를 요구하여 국사원에 송부한다.¹⁰³⁾ 이 중 ④수도회 및 그 구성원의 교구 주교 복종 요건은 원래 가톨릭을 염두에 둔 것이다. 비가톨릭에 대해서는 주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복종으로 충분하다.

다. 법률상의 능력

수도회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음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모든 민사상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회에는 증여·유증의 수령 및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인정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회 또는 허가를 박탈당한 수도회는 일반 비영리사단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

97) 1989년 11월 14일 국사원 내무부 의견(Conseil d'État, section de l'Intérieur, n° 346.040, avis du 14 novembre 1989)

98) 예를 들어 불교에는 7개 단체, 동방정교회에는 4개 단체, 개신교에는 2개 단체, 그리고 힌두교에는 1개 단체의 수도회가 각각 허가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Claude-Albert Colliard et Roseline Letteron, *Libertés publiques*, 8e éd., Dalloz, 2005, p.431 참조.

99)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13조 1항

100) 1901년 비영리사단법 시행령 제17조

101) 1901년 비영리사단법 시행령 제18조

102) 1901년 비영리사단법 시행령 제20조

103) 1901년 비영리사단법 시행령 제21조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것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머무른다.

라. 운영

수도회는 일반 비영리사단에 관한 비영리사단법의 규제를 받는 것 외에 회계 및 재무에 관하여 특히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즉 수도회는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보관하고 매년 전년도에 수지보고서, 동산·부동산에 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구성원의 성명, 수도회 내부에서의 호칭, 국적, 연령, 출생지, 가입일을 기재한 명부를 본부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¹⁰⁴⁾ 이들은 지사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제시해야 하며,¹⁰⁵⁾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 수도회의 대표자는 처벌된다.¹⁰⁶⁾ 수도회가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국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¹⁰⁷⁾

마. 해산

수도회의 해산 및 시설의 폐지는 국사원의 회의를 거친 데크레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¹⁰⁸⁾ 이는 사법해산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비영리사단과 대조적이다.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하지만 수도회의 해산은 통상 다른 수도회와의 합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잔여재산은 활동 종료에 앞서 합병하는 수도회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3) 종교사단(association cultuelle)

가. 총설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의거한 일반 비영리사단법인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1905년 정교분리법은 특히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사단¹⁰⁹⁾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전과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종교사단에 대해서는 1905년 정교분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율한다.

나. 설립

104) 1901년 비영리사단법 15조 1항·2항

105) 1901년 비영리사단법 15조 3항

106) 1901년 비영리사단법 15조 4항

107)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13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이하

108)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13조 3항

109) 번역어에 관해서는 각주12) 참조. 1905년 정교분리법 제정 직후의 논란에 대해서는 전술 II.3.(1) 참조.

종교예배의 비용, 유지 및 공적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결성된 사단은 1901년 비영리사단법의 일반 비영리사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다.¹¹⁰⁾ 따라서 종교사단의 설립 절차는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일반 비영리사단과 동일하다. 다만 종교사단의 설립에는 일반 비영리사단과 달리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제한이 있다. 첫째로, 설립 시의 최저 인원이 법정되어 있다. 즉 종교사단은 본부 소재 지자체의 인구에 따라 1,000명 미만에서는 7명 이상, 20,000명 미만에서는 15명 이상, 20,000명 이상에서는 25명 이상의 성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¹¹¹⁾ 이러한 관계로 설립 신고에는 종교사단 활동구역 및 그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갖거나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인원수 일람표를 첨부하여야 한다.¹¹²⁾ 둘째로, 종교사단은 오로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¹¹³⁾ 이러한 목적한정 규정은 판례에서도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종교사단은 종교활동 이외의 공익 활동이나 선전활동을 하는 것은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선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각 종교는 종교사단과는 별도로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의거한 일반 비영리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사단은 중앙의 관리 또는 지시를 받는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¹¹⁴⁾

다. 법률상의 능력

종교사단의 법적 능력은 일반 비영리사단의 경우와 다르다. 종교사단은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6조에서 정하는 회비는 물론, 종교활동의 비용을 위한 헌금 및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종교상의 의식 및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¹¹⁵⁾ 이렇게 종교사단의 수입은 기본

110) 1905년 정교분리법 제18조: 종교예배의 비용, 유지 및 공적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사단은 1901년 7월 1일법률 제1장 제5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단은 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Article 18: Les associations formées pour subvenir aux frais, à l'entretien et à l'exercice public d'un culte devront être constituées conformément aux articles 5 et suivants du titre 1er de la loi du 1er juillet 1901. Elles seront, en outre, soumises aux prescriptions de la présente loi.

111) 1905년 정교분리법 제19조 2항

112) 1905년 정교분리법 시행령 31조 2항·3항

113) 1905년 정교분리법 제19조 1항

114) 1905년 정교분리법 제20조

115) 1905년 정교분리법 제19조 4항

적으로 정교분리법 제19조 4항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¹¹⁶⁾ 2005년의 법개정¹¹⁷⁾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용이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¹¹⁸⁾ 이 개정 전까지 종교사단이 증여·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사전 인가가 필요했으나,¹¹⁹⁾ 무상양여의 신고를 간략하게 하는 2005년 법 개정¹¹⁹⁾에 따라 종교사단은 행정기관에 사전신고만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 및 유증을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¹²⁰⁾ 다만, 행정기관은 해당 증여 등이 규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국사원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의가 인정되면 증여 등의 취득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²¹⁾ 또한 이 수증절차는 수증능력을 인정받은 일반 비영리사단 및 수도회에도 적용된다. 한편 종교사단은 라이시테 원칙에 따른 제한으로,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일체 받을 수 없다.¹²²⁾ 다만 예배용 건물의 수선을 위해 지급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¹²³⁾

라. 운영

종교사단은 일반 비영리사단에 관한 규제를 받는 것 외에 정교분리법상의 특별한 규제를 받는다. 우선 종교사단은 규약 규정과 관계없이 이사 또는 관리인이 실시한 재무관리 및 재산관리 행위의 승인을 위해 매년 적어도 1회 사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¹²⁴⁾ 또한 종교사단은 수지계산서를 비치하고 매년도 회계장부 및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¹²⁵⁾ 재산목록에는 종교사단이 취득한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이 물건별로 기재되어야 한다.¹²⁶⁾ 종교사단은 이들의 회계장부 재산목록을 5년간

116) 1905년 정교분리법 시행령 제33조

117) 이러한 개정 내용에 관한 소개로, 權澈 「非營利法人への恵代に関する事前許可制の廃止」 日仏法学24号 (有斐閣、2007), 128면 이하.

118) 1905년 정교분리법 제19조 5항.

119) 수증인가제. 1905년 정교분리법 구 제19조 5항

120) 수증신고제. 민법 제910조 2항

121) 민법 제910조 2항 2문, 3문

122) 1905년 정교분리법 제2조 1항

123) 1905년 정교분리법 제19조 7항

124) 1905년 정교분리법 제19조 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125) 1905년 정교분리법 제21조

126) 1905년 정교분리법 시행령 제43조

보관하여야 한다.¹²⁷⁾ 또한 종교사단은 등록행정기관에 의한 회계감사 및 재무감찰관에 의한 감사에 따르고,¹²⁸⁾ 보유하는 재산(현금, 예금, 유가증권)에 관한 서류 및 과거 5년의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¹²⁹⁾ 종교사단은 수입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오직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¹³⁰⁾ 또한 잉여금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종교사단에 만 납입할 수 있다.¹³¹⁾

마. 해산

종교사단에는 일반 비영리사단과 같은 해산이 인정되는 것 외에 정교분리법 제18조부터 제22조에 위반되는 경우(종교활동 이외의 활동, 회계장부·재산목록 미비 등)에 법원에 의한 해산선고 인정되고 있다.¹³²⁾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은 일반 비영리사단의 경우와 같다. 물론 이들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¹³³⁾

(4) 1905년 정교분리법 개정 문제

2006년 6월에 사르코지 내무장관에게 제출된 마슈론 위원회의 보고서(“종교와 공권력과의 관계”)¹³⁴⁾는 1905년 정교분리법 이후 백주년을 계기로 하여 법적 측면에서 프랑스 종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사단에 대한 규제완화에 관한 것,¹³⁵⁾ 일반 비영리사단과 종교사단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세 내용은 생략한다.¹³⁶⁾

127) 1905년 정교분리법 시행령 제44조

128) 1905년 정교분리법 제21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129) 1905년 정교분리법 시행령 제45조

130) 1905년 정교분리법 시행령 제33조

131) 1905년 정교분리법 제19조 6항.

132) 1905년 정교분리법 제23조

133) 1905년 정교분리법 시행령 제47조

134) Jean-Pierre Machelon, *Les relations des cultes avec les pouvoirs public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6. 앞의 각주54) 참조.

135) 구체적으로는 준비금 상한 철폐 또는 증액, 연합체 설립의 간소화, 자금조달의 용이화 및 부동산 취득요건의 완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제19조의 목적 요건 완화도 제안하고 있다.

136) 각주55)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 최종교정 마감 직전에 1905년 정교분리법 제19조 이하의 규정을 개정하는 최신 법률이 통과된 것을 인지하였다. 2021년 8월 24일 법률에 따른 것인데, 이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고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

IV. 관련문제 : 조세·보조금 및 교육·사회활동

1.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제도

(1) 개관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종교단체는 일반적으로 비영리사단 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법률관계도 비영리사단 법제의 범주에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다양한 조세 우대조치가 있지만 이것은 종교단체인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비영리사단에 인정되는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종교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세제와 함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 조세 우대조치의 근거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 우대조치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로, 단체의 '비영리성'이 우대조치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단체가 사업 및 증여에서 얻은 재산적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업활동에 관한 세제(법인세 등)은 '영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이고, 따라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1901년법에 근거한 비영리사단법인, 노동조합 등)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된다. 종교단체는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둘째로, '비영리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더 나아가 단체 활동의 '일반이익성' 또는 '공익성'에 착안한 우대조치이다. 공익활동은 원래 국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대신 행하는 사적 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되는 것이다. 다만 라이시테(비종교화)원칙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순수한 사적단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이익' 내지는 '공익'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과세제도에서 자선단체 등 공익단체에 대하여 인정되는 우대조치가 많은 경우 종교단체에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고려하는 때에는 '비영리성' 기준과 함께 '공익성' 기준도 놓칠 수 없는 관점이다.

다는 점을 부기해 둔다.

(3) 종교단체에 관한 보조금 제도

1905년 정교분리법 제2조는 "공화국은 어떠한 종교도 공인하지 아니하고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주지 아니한다"(제1항)라고 규정하여, 종교단체에 공적 보조금을 주고 있던 이전 제도를 개정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동법 제19조 7항에 의하면 신도회는 "형태 여하를 묻지 않고 국가, 도, 시읍면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금지 원칙은 이미 정교분리법 자체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제2조 2항, 제19조 7항 단서), 제정 당시부터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 후에 이러한 원칙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종교단체에 관한 보조금 문제는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직자에 대한 것, 예배용 건물에 관한 것, 사립학교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¹³⁷⁾

2. 종교단체의 교육·사회활동

(1) 종교단체의 사회활동

종교단체가 신문, 잡지,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은 프랑스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신도회로 대표되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 이외의 사회적 활동(예를 들면, 자선사업, 서적판매등 영업활동, 교육사업, 정치적활동)을 하는 경우, 법제상의 원칙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주의할 점은 현행법인 1905년 정교분리법 하에서는 종교단체는 그러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정교분리법에 의하면, 신도회가 교회재산의 귀속처이고 예배용건물의 무상사용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신도회는 "종교예배의 비용, 유지 및 공적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전적으로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8조, 제19조 1항)이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실무적으로도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에 종교단체가 종교활동 이외의 사회적 활동을 하려면, 1901년 비

137) 알자스·로렌 지방에서의 예외적 규율도 포함하여 프랑스 법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소개는 생략한다.

영리사단법에 규율하는 비영리단체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종교활동과 문화활동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이슬람교의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프랑스사회에서 종교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교분리법상의 신도회로 운영되는 모스크의 수는 10퍼센트 이하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신도회의 활동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법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문제는 위에서 언급하였다.

(2) 시설사제 제도

종교단체의 사회적 활동에서 이른바 시설사제 제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라이시테로 불리는 프랑스 정교분리 제도는 단지 정교분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여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교분리법의 총칙규정이 "시설사제의 업무에 관하여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구원시설, 양로시설 및 교도소 등의 공공시설법인에서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출은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동법 제2조 단서)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시설사제(aumônier)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시설사제 제도는 공교육시설, 공립병원, 형무소, 군대 등 이른바 닫힌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예배와 종교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데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라이시테의 구성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3) 종교단체의 교육활동

이미 서술한바와 같이, 공교육의 라이시테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은 제3 공화제 하의 공화주의 입법에 의해서 전개되어왔다. 이것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공권력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잘 보여 주는데, '종교 스카프 금지법'¹³⁸⁾이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종교상의 소속을 과시하는 표장 또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¹³⁹⁾고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138) Loi n° 2004-228 du 15 mars 2004 encadrant, en application du principe de laïcité, le port de signes ou de tenues manifestant une appartenance religieuse dans les écoles, collèges et lycées publics.

와 같이 라이시테 원칙이 작동되는 공교육의 경우와 달리,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을 임의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¹⁴⁰⁾ 사립학교의 대부분을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인 것을 감안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은 가톨릭교회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¹⁴¹⁾ 다른 한편, 제3공화제 이후의 교육관계법규가 공립학교에서 모든 종교교육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법전에 편입된 제141-2조 이하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교분리 원칙 하에서도 예배나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는 제도가 위에서 언급한 시설사제 제도와 공립학교 사제 제도이다.

V. 맺음말에 갈음하여

1. 이상으로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프랑스법을 비교법의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머리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프랑스의 비영리단체 법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개가 이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부족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본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도 프랑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는데, 본고는 프랑스 법제의 상황을 가능한 한 배경사정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프랑스의 단체·법인법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법적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미 본고는 원고의 분량을 넘었기 때문에 후속작업을 포함한 우리법과의 본격적인 비교는 별고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맺음말에 갈음하여 현 단계에서 필자

139) 같은 법 제1조.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 제141-5-1조 참조

140) 교육법전 제141-3조 2항 참조

141)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1959년 두블레법이 규정한 국가와 사립학교의 계약관계('협동 관계'와 '통상계약'으로 구분됨)로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교육법전 제442-1조, 제442-5조 등 참조.

가 가지는 인식을 밝혀두기로 한다.

2. 프랑스 법제에 관한 고찰은 우리법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객관화, 상대화하는 흥미로운 소재를 제공한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 제정에 의해서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으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이다. 프랑스의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에는 대혁명 사상 그리고 제3공화제 시기 공화파의 반교회·반가톨릭 사상이 반영되었다. 많은 경우에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관해서는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이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는 점만 주목을 받는데, 동법의 후반 부분은 수도회에 관한 철저한 규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법에서는 정교분리가 선언되고, 종교사단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율이 마련됨으로써 종교단체 법제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론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의 철저한 반가톨릭교회 정책은 점차로 완화되어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호적인 종교단체 법제로 볼 수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이 종교단체의 (사단)법인화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구조가 10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3. 우리법의 종교단체에 관한 법제는 민법학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관한 특별법이 없는 관계로 종교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등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불교와 유교의 경우에는 각 종교에 관한 규제법이 일찍 제정된 것에 비하여, 가톨릭과 개신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서 많은 경우 가톨릭 교구나 개신교 교단과 같은 포괄종교단체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한편, 대부분의 단위교회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신교의 단위교회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그동안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관한 입법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대체로 불교계에서는 찬성하는 반면 기독교계 특히 교회 일선에서는 강하게 반대해왔다.¹⁴²⁾ 가장 큰 이유로 종교단체의 법인화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이유가 거론되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유의미한 논의가 없지 않았는데,¹⁴³⁾ 프랑스의 관련법제에 관한 정보는 논의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4. 1960년부터 시행된 우리민법전에서는 그 이전의 의용민법에서 공익법인만 규율하던 것과 달리 비영리법인 전반을 규율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바람직한 결단이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서는 주무관청 허가제를 기반으로 의용민법 시절의 매뉴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 의한 통제를 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종교단체의 법인화나 시민단체의 법인화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논조에서 먼저 내세우는 의견은 국가에 의한 규제가 종교의 자유, 시민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을 상기해 보면 필자의 인식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할 것이다. 1990년대 말 이후 민법개정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는데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에 관하여 주무관청제의 유지를 전제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개정하는 것, 비법인단체에 법인규정을 준용하는 것 등의 개선책이 제시되었으나 번번이 폐기되었다. 최근에는 어려운 민법개정은 차치하고 공익법인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21세기 우리 시민사회에 걸맞은 단체법제의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142)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해서는 권철, “‘종교재단’에 관한 소고: 종교단체 법인화 문제 서론”, 법학논총(승실대) 47집, 2020, 215면 이하를 참조.

143) 예컨대 전계 주7)의 자료(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종교단체의 법인체 등록, 1991).

계속 쌓여가는 형국이다.¹⁴⁴⁾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고를 맺는다.

(논문투고일: 2021.8.30., 심사개시일: 2021.9.10., 게재확정일: 2021.9.24.)



권 철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프랑스, 사단법인, 정교분리,
한국 민법학

144) 권철,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소고: 우리 법제의 과거·현재·미래”, 성균관법학 32권 4호, 2020, 1면 이하.

【참 고 문 헌】

○ 프랑스(발행 연도순)

Léon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2e édition, Tome 5, 1925

Adrien Dansette, *Histoire religieuse de la France contemporaine: L'Eglise catholique dans la mêlée politique et sociale*, Edition revue et corrigée, 1965

Jean Morange, *La liberté d'association en droit public français*, 1977
Édité par France,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 la décentralisation,
Cultes et associations cultuelles, congrégations et collectivités religieuses, Journaux officiels, 1985

Commission d'enquête sur les sectes, *Les sectes en France*, Journaux officiels, 1996

Conseil d'Etat, *Un siècle de laïcité - Rapport public 2004*, Collection Les études du Conseil d'Etat, 2003

Francis Messner, Pierre-Henri Prélôt, Jean-Marie Woehrling (éds.), *Traité de droit français des religions*, Litec, 2003

Xavier Delsol, Alain Garay, Emmanuel Tawil (éds.), *Droit des cultes. Personnes, activités, biens et structures*, Av.-prop. de Blandine Chelini-Pont. Lyon, Dalloz - Juris Associations, 2005

Jean-Pierre Machelon, *Les relations des cultes avec les pouvoirs public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6

Journaux officiels, *Guide des association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6

Claude-Albert Colliard et Roseline Letteron, *Libertés publiques*, 8e éd., Dalloz, 2005

Brigitte Basdevant-Gaudemet, État et Églises en France : in : Gerhard Robbers (Hrsg.), *Staat und Kirche in der Europäischen Union*, 2008.(독일어판, 영어판은 2005년 출판

(Baden-Baden: Nomos 2. Aufl. 2005), 프랑스어판은 2008년
온라인판으로 공간)

Jean Morange, Le "mystère" de la laïcité française,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itique en France et a l'étranger*, N° 3, 2013.

Philippe-Henri Dutheil, *Droit des associations et fondations*, 1e édition, Dalloz, 2016

Nathalie Luca, *Les sectes*, PUF, 2016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정부공인 법령정보)

<https://www.conseil-etat.fr/> (프랑스 국사원)

○ 한국(발행 연도순)

황우여, 국가와 교회: 독일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2.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종교단체의 법인체 등록, 민족문화사, 1991

이영진,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에 관한 연구: 미연방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 각국 판례의 비교,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남효순, “프랑스法에서의 법인의 역사 : 법인론 및 법인에 관한 판례와 입법의 발달사”, 서울대 법학, 40권 2호, 1999

여하운,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15권 4호, 2008

지규철, “프랑스헌법에서의 라이시떼(laïcité) 원칙에 관한 고찰”, 공법학 연구 10권 3호, 2009.

지규철, “프랑스공교육에서의 비종교성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이슬람스 카프논쟁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4호, 2009

임종권, "드레뤼스 사건: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교회", 서양사론 102호, 97-124, 2009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 공익성이 인정된 사단 및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45권 1호, 2010

권철, “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 개정안의 법인제도”, 비교사법 17권

4호, 37면, 2010

전훈,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고찰 : 프랑스 라이시테(la laïcité)원칙에
관한 쾨세이테타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경북대) 41집, 2013

박수곤, “프랑스법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규율”, 전북대 법학연구
39집, 2013

정상우, “정교분리 원칙의 모델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헌법학연구
20권 1호, 2014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laïcité)의 원칙, 헌법재판연구원 연구
보고서, 2018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 1905년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가천법학 11권 1호, 2018

외교부, 프랑스 개황, 2018

김정인, “프랑스 제3공화정 초기 공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체계의 완성”,
서양사론 132호, 2017.

권철, “‘종교재단’에 관한 소고: 종교단체 법인화 문제 서론”, 법학논총
(숭실대) 47집, 2020

권철,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소고: 우리 법제의 과거·현재·미래”,
성균관법학 32권 4호, 2020

김세희, “‘라이시테’를 통해서 본 19세기 프랑스의 교육: 근대화와 도덕·
시민교육”, 한국교육사학 42권 2호, 2020

○ 일본(발행 연도순)

大石眞『憲法と宗教制度』(有斐閣、1996)

小泉洋一『政教分離と宗教的自由 : フランスのライシテ』(法律文化社、
1998)

權澈「非営利法人への恵代に関する事前許可制の廃止」日仏法学24号(有
斐閣、2007)

高村学人『アソシアシオンへの自由 : 〈共和国〉の論理』(勁草書房、20
07)

Abstract

Prolegomena to rethinking of the Legal System of French Religious Organizations

KWON, Chul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intenance and public exercise of their religion" so they could perform all the missions previously performed only by the four religion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constituted under the law of April 8, 1802 (The Catholic, the Lutheran and the Reformed Churches and the Jewish Synagogue).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as needed indeed in order for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to acquire a property and building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worship and with respect the public exercise of worship only. This included also the exercise of worship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laces of worship, the receiving of donations, and the remuneration of ministers.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are sole responsible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of their ministers and for the content of their theological training which reflect their belief system. (association cultuelle 1905)

Catholicism refused to apply the 1905 law (It would create later the diocesan associations). The Protestant churches thus form the vast majority of religious associations, the associative model presenting the obvious parallels with their traditional presbyterial system of organization. The being

and mission of these churches are not yet exhausted in these associations: they had to establish, among themselves or together with other associations only ‘the 1901 law’ that allows them to exercise including self-help and Mission.

From this Article'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hat the 1901 law and the 1905 law completed a basic system that stipulates in detail the rules for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at this structure remains solid even after more than 100 years.



KWON Chul

Non-Profit Organization, France, Association,
Separation of the Churches and the State, Korean
Civil Law